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80
----------	-------

발의연월일 : 2026. 1. 28.

발 의 자 : 김영호 · 김원이 · 김문수
박성준 · 문정복 · 강경숙
진선미 · 박홍배 · 이광희
백승아 · 진성준 · 김태년
최혁진 · 민병덕 · 허영
박상혁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단검사 결과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초수준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저학년부터 문해력의 부족이 교과 전반의 이해 저하로 이어져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기초학력진단검사는 주로 교과 성취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생의 문해력과 같은 기초학습 능력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문해력 및 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의 학습 결손의 원인

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개별적
· 집중적 지원 및 담당 전담교원의 지정·양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문해력”이란 기초학력의 기반이 되는 능력으로써 글을 읽고 쓰거나 이해하며, 이를 활용한 비판적 사고 및 의사소통 능력을 말한다.

1의3. “수리력”이란 기초학력의 기반이 되는 능력으로써 수와 셈하기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논리적 사고 및 문제해결 능력을 말한다.

제7조의 제목 “(기초학력진단검사)”를 “(기초학력진단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기초학력진단검사”를 “기초학력진단검사와 문해력·수리력진단검사”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문해력 및 수리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읽기·쓰기 또는 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을 평가하는 검사(이하 “문해력·수리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기초학력진단검사”를 “기초학력진단검사 및 문해력·

수리력진단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력 수준”을 “기초학력 및 문해력·수리력 수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학교의 장은 문해력 또는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개별적·집중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해력 또는 수리력 분야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분야별·수준별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u><신설></u> 2. 3. (생략)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u>1의2. “문해력”이란 기초학력의 기반이 되는 능력으로써 글을 읽고 쓰거나 이해하며, 이를 활용한 비판적 사고 및 의사소통 능력을 말한다.</u> <u>1의3. “수리력”이란 기초학력의 기반이 되는 능력으로써 수와 셈하기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논리적 사고 및 문제해결 능력을 말한다.</u> 2. 3. (현행과 같음)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문해력 및 수리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읽기·쓰기 또는 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을 평가하는 검사(이하 “문해력·수리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u>

②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① (생략)

<신설>

있다.

③ -----기초학력진단검사와 문해력·수리력진단검사-----
-----.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
----기초학력진단검사 및 문해력·수리력진단검사-----

-----.

② -----
-----기초학력 및 문해력·수리력 수준-----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문해력 또는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개별적·집중적인 교육을 지원

② · ③ (생 략)	<u>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해 력 또는 수리력 분야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분야별 · 수준별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u>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	---